소송 등의 판결·결정(1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
2. 원고・신청인	안화자
3. 판결・결정내용	1..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판결・결정사유	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.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7년 4월 21일
7. 확인일자	2017년 4월 24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